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제1조(약관의 목적)

- ①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과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수탁자")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계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
 4. 신탁기간이 3년 이상일 것
 5. 총 납입한도가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천만원 \times [1 + \text{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text{누적납입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탁금액)

- ① 이 신탁계약에서 최초로 신탁하는 최저 신탁금액은 금 1만원으로 한다.
- ② 위탁자는 신탁기간 이내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 ③ 신탁기간(3년 이상) 동안 신탁금액의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제5조(신탁기간)

- ① 신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넘는 범위에서 위탁자가 지정한 기간으로 하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신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신탁기간 종료일 최소 1개월 전까지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때에는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탁기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6조(신탁재산의 운용)

- ① 위탁자는 [별표1]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서에 적어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좌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 ③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 ④ 위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지정)

- ① 위탁자는 제6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탁자는 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운용내역 확인 등)

- 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가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법적절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1조(손익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13조(신탁보수)

- ① 신탁보수는 아래의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별 선취신탁보수, 후취신탁보수 및 고유계정대에 대한 신탁보수의 합으로 한다.

$$\begin{aligned} \text{운용자산별 선취신탁보수} &= \text{운용지시액} \times \text{선취신탁보수율} (\%) \\ \text{운용자산별 후취신탁보수} &= \text{운용자산평균잔액} \times \text{후취신탁보수율} (\%) \times \text{자산운용기간(일수)} / \text{1년} \\ \text{고유계정대에 대한 신탁보수} &= \text{고유계정대평균잔액} \times \text{신탁보수율} (\text{연 } 0.1\%) \times \text{신탁기간(일수)} / \text{1년} \end{aligned}$$

- ② 운용자산평균잔액은 일별 운용자산원본잔액을 자산운용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자산운용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③ 운용자산별 선취신탁보수율 및 후취신탁보수율은 해당 자산의 운용자산설명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본 조에서 운용자산별 자산운용기간(일수)은 해당 자산의 최초 매입일로부터 최종 매도일(상환일) 전일까지로 계산한다.
- ⑤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보수 차감일로부터 제6항에서 정한 보수 수령일 또는 요구한 날의 전일까지로 계산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 ⑥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 또는 중도인출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 ⑦ 각 운용자산별 선취신탁보수의 환급은 만기가 있는 운용자산에 한하여 적용하며, 위탁자가 해당 자산을 만기 이전에 중도환매하는 경우 수탁자는 자산 만기일까지 미경과 자산 운용기간에 해당하는 선취신탁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제14조(이익의 계산 및 지급)

-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이익을 계산하여 신탁원본에 더한다.
 1. 신탁계약 해지 또는 중도인출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2. 신탁기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3. 그 밖의 날()
- ② 신탁이익 계산의 대상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5조(세금 및 비용)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한다.

제16조(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위탁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위탁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수탁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7조(중도해지)

- ① 제5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 ②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제16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정받으며, 해당 소득은 추정일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수탁자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④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는 중도해지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8조(신탁계약의 종료)

- ① 제5조에 따른 신탁기간이 만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모든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신탁재산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교부하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 ④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보수는 제13조에서 정한 보수의 50%로 계산한다.
- ⑤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9조(최종계산)

- ①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는다.
- ②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위탁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위탁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위탁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청약의 철회)

-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의 철회할 수 있다. 단 위탁자가 청약철회의 기간 내에 예약한 금전을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연체자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제21조(위법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신탁계약의 변경 등)

-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기준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신·구 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 신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제1조(약관의 목적)

- ①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과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수탁자")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계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
 4. 신탁기간이 3년 이상일 것
 5. 총 납입한도가 1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천만원 \times [1 + \text{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text{누적납입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3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탁금액)

- ① 이 신탁계약에서 최초로 신탁하는 최저 신탁금액은 금 1만원으로 한다.
- ② 위탁자는 신탁기간 이내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 ③ 신탁기간(3년 이상) 동안 신탁금액의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한다.

제5조(신탁기간)

- ① 신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넘는 범위에서 위탁자가 지정한 기간으로 하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신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신탁기간 종료일 최소 1개월 전까지 신탁기간이 끝나는 날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때에는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탁기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6조(신탁재산의 운용)

- ① 위탁자는 [별표1]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서에 적어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좌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 ③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 ④ 위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지정)

- ① 위탁자는 제6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탁자는 대리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운용내역 확인 등)

- 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가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법적절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1조(손익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13조(신탁보수)

- ① 신탁보수는 아래의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별 선취신탁보수, 후취신탁보수 및 고유계정대에 대한 신탁보수의 합으로 한다.

$$\begin{aligned} \text{운용자산별 선취신탁보수} &= \text{운용지시액} \times \text{선취신탁보수율} (\%) \\ \text{운용자산별 후취신탁보수} &= \text{운용자산평균잔액} \times \text{후취신탁보수율} (\%) \times \text{자산운용기간(일수)} / \text{1년} \\ \text{고유계정대에 대한 신탁보수} &= \text{고유계정대평균잔액} \times \text{신탁보수율} (\text{연 } 0.1\%) \times \text{신탁기간(일수)} / \text{1년} \end{aligned}$$

- ② 운용자산평균잔액은 일별 운용자산원본잔액을 자산운용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자산운용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③ 운용자산별 선취신탁보수율 및 후취신탁보수율은 해당 자산의 운용자산설명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본 조에서 운용자산별 자산운용기간(일수)은 해당 자산의 최초 매입일로부터 최종 매도일(상환일) 전일까지로 계산한다.
- ⑤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보수 차감일로부터 제6항에서 정한 보수 수령일 또는 요구한 날의 전일까지로 계산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⑥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 또는 중도인출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⑦ 각 운용자산별 선취신탁보수의 환급은 만기가 있는 운용자산에 한하여 적용하며, 위탁자가 해당 자산을 만기 이전에 중도환매하는 경우 수탁자는 자산 만기일까지 미경과 자산 운용기간에 해당하는 선취신탁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제14조(이익의 계산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이익을 계산하여 신탁원본에 더한다.
1. 신탁계약 해지 또는 중도인출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2. 신탁기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3. 그 밖의 날()
② 신탁이익 계산의 대상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5조(세금 및 비용)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한다.

제16조(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천재지변
- 2. 위탁자의 퇴직
- 3. 사업장의 폐업
- 4. 위탁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5. 수탁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17조(중도해지)

① 제5조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제16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정받으며, 해당 소득은 추정일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 수탁자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는 중도해지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제18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제5조에 따른 신탁기간이 만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모든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위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로 교부되는 신탁재산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교부하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가 곤란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한다.
④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보수는 제13조에서 정한 보수의 50%로 계산한다.
⑤ 신탁재산의 만기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가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9조(최종계산)

①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얻는다.
②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위탁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위탁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위탁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제2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청약의 철회)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의 철회할 수 있다. 단 위탁자가 청약철회의 기간 내에 예약한 금전을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1조(위법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신탁계약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기준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신·구 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 신탁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



